



통권 492호

2024

08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하계 법학전문 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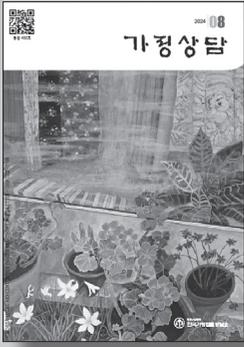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상담소 사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구조서류 작성, 사이버 상담 실습, 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소장 작성 및 판례 평석,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참관 및 기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관련 내용 32면, 관련 기사 34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부 : 부끄럽게 주신 선물
- 패 : 패기있게 거절합니다.
- 방 : 방법을 바꿔주세요.
- 지 : 지원은 회원가입이 시작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 12 · 특별기고 | 출생통보제의 시행, 관련 제도의 변화
- 17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⑥
- 21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①
- 23 · 가정폭력상담실
- 26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독립운동 열전 01_잊힌 사건을 찾아서
- 30 · 결혼과 인생(239) 영화 이야기
맘마 미아! _ 김용언
- 32 · 실무수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상담소와 이태영 선생님,

우리나라 법률구조 역사의 시작을 돌아보며

1956년 8월 25일 오후 2시, 을지로 입구 네거리에 있던 여성단체총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여성법률상담소 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내려앉은 당시의 희미한 사진을 보면서 냉방시설도 없었던 무더위 속에 마침내 시작된 우리나라 법률구조 역사의 현장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날이 올해 창립 68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상담소의 시작입니다. 상담소는 10주년, 30주년, 50주년 등 역사적인 매듭을 짓는 해에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변화를 짚어보며 상담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보통 때에는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이 그저 묵묵하고 조용하게 상담과 업무로 분주한 변함없는 날을 보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시작, 그 뿌리 깊은 연원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늘 그렇듯이 지금도 상담소 시작의 그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 주변의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쓰신 취지문에는 광복 11주년을 맞이하며 상담소가 문을 열었을 당시 우리 사회의 여성과 가정 문제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질곡에 빠진 여성의 삶 앞에서 헌법상 권리 즉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법률상의 지위를 근간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담소 창설에 앞서 이미 이태영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선생님과 여성문제연구원이 형법전이나 민법전의 제정이 헌법상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여성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여성을 법률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이 상담소의 개소로 이어졌으며 또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 것인지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개소식을 한 상담소는 1956년 8월 27일 월요일 상담 제1일을 맞이합니다. 이에 대해 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9시부터 기다리던 여인이 제1호로 접수되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으나 여섯 건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상담소의 첫 번째 내담자는 평안남도 순천군 출신으로 단신 월남한 38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를 통해 상담소는 앞으로 ‘법률’을 넘어선 ‘인생’을 상담하게 될 것이라 예감했다고 하며, 이것은 앞으로 상담소 70여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깨우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며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으로 상담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마침내 동성동본 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이혼제도의 개선,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담소는 한국 사회의 가정과 가족의 문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고, 문제의 당사자인 가족구성원의 곁을 지켰으며,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법과 제도의 운용뿐 아니라 그 법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도 집중하여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개혁을 위한 사회 교육 사업도 선구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첫날,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한 사람을 다음날 다시 찾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상담소의 작은 시작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면접상담은 물론 피치 못할 경우의 전화와 통신 상담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상담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연 1천여 건 이상의 소송구조와 법원, 검찰로부터 의뢰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물론 파산, 면책

관련 상담과 소송구조까지 모든 가정, 가족구성원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발전의 과정에서 상담소는 임의단체로 시작하여 사단법인, 공익법인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은 법률구조를 목적사업으로 한 상담소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 권익 신장을 꿈꾸며 일찍부터 ‘여성은행’, ‘여성신문’ 등 경제와 언론 분야 등에서 여성이 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이 같은 바람은 유력 언론의 여성 편집인, 여성 사장 그리고 여성 은행장의 출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위대한 한 인물의 꿈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내내 지켜보고 함께 해 온 저로서는 상담소의 구성원으로서 기쁘고 보람된 나날들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6월 1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법정을 ‘이태영홀’로 명명하는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자 법학박사로 상담소를 창설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과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이화여대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법학 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의 많은 여성 법조인을 배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적을 기린다는 뜻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법정에 선생님의 이름을 담아 기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시지만 선생님에 의해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탄생된 상담소는 현재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역사를 가진 상담소가 더욱더 제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내후년이면 상담소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년, 100년 후에도 상담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 번민하는 이웃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Zoom 플랫폼 기반 화상상담, 지역과 거리 제한 없어 활발한 진행 계속 사회상의 변화 반영한 새로운 상담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듯

- 2022년 7월 15일 화상상담 시작
- 2023년 한 해 동안 793건 상담
- Zoom 플랫폼 접근 용이한 청장년층 이용 많아
- 이동 없이 상담 가능해 지역이나 거리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
- 신청한 시간에만 접속하면 상담 가능해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의 이용률도 높아
- 남녀 모두 이혼, 양육비 순으로 상담 많아

본 상담소에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Zoo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적 상담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화상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상담에 익숙해진 내담자들이 거리상, 시간상 편리성을 고려해 꾸준히 화상상담을 신청해 와 상담소에서는 활발하게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2개의 회선에서 30분 단위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는데 내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국내외 등 장소 제약 없이 자신이 신청한 시간에 접속하기만 하면 손쉽게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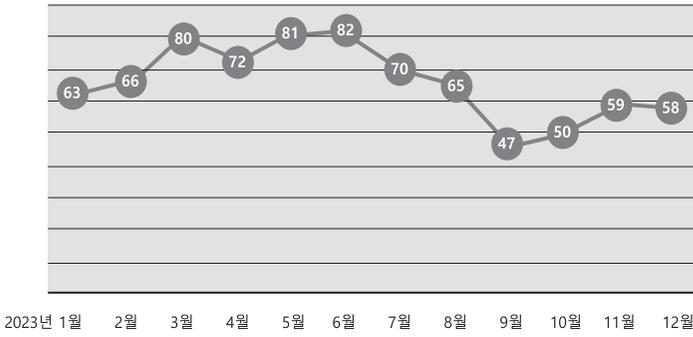
1. 상담건수

2023년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793건의 화상상

담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월별로 상담건수의 등락폭이 컸으나 2023년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월 평균 66건 내외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월별 상담건수 분석표 〉

월	2023년
1	63
2	66
3	80
4	72
5	81
6	82
7	70
8	65
9	47
10	50
11	59
12	58
합계	793
월평균	66



2. 내담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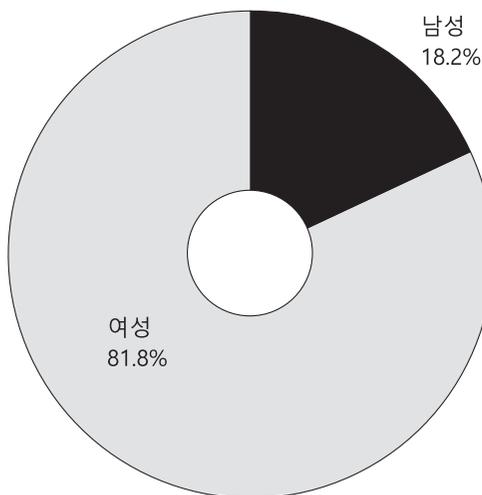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많아

여 성	649 명	81.8%
남 성	144 명	18.2%
합 계	793 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649명(81.8%), 남성이 144명(18.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많았다.

본 상담소에서 2023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을 한 내담자의 성별은 여성 55.0%, 남성 45.0%로 나타났는데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연령별

남녀 모두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대면상담에 비해 줌 플랫폼 접근 용이한 청장년층 많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8.6%(30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33.9%, 269명), 50대(14.8%, 117명), 20대(8.7%, 69명), 60대 이상(3.9%,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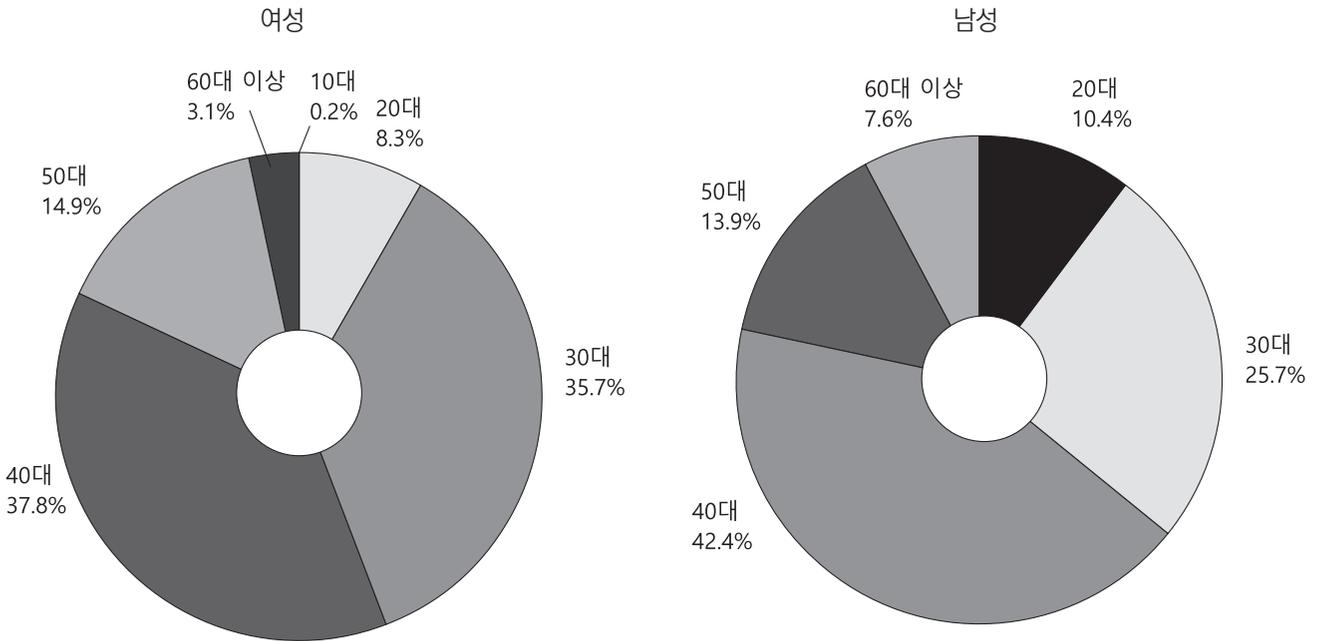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40대가 37.8%(24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5.7%, 232명), 50대(14.9%, 97명), 20대(8.3%, 54명), 60대 이상(3.1%, 20명), 10대(0.2%,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40대가 42.4%(6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25.7%, 37명), 50대(13.9%, 20명), 20대(10.4%, 15명), 60대 이상(7.6%, 11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3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의 내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40대(28.3%), 60대 이상(24.8%), 50대(20.3%), 30대(19.4%), 20대(6.7%)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31.0%), 40대(27.3%), 50대(23.4%), 30대(13.7%), 20대(4.4%) 순으로 나타나 화상상담과 차이를 보였다.

화상상담에서는 남녀 모두 40대, 30대, 50대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그러나 면접상담에서는 여성은 40대,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많았고, 남성은 60대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많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에서 차이를 보였다. 화상상담의 경우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30대의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화상상담 방식의 기반이 되는 줌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노년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1	0.2	-	-	1	0.1
20대		54	8.3	15	10.4	69	8.7
30대		232	35.7	37	25.7	269	33.9
40대		245	37.8	61	42.4	306	38.6
50대		97	14.9	20	13.9	117	14.8
60대 이상		20	3.1	11	7.6	31	3.9
합 계		649	100	144	100	793	100



3) 직업별

여성은 주부, 회사원, 기타, 교육직 순으로
남성은 회사원, 자영업, 기타, 무직 순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25.6%(20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회사원(21.2%, 168명), 기타(11.3%, 90명), 자영업·교육직(각 7.6%, 각 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31.1%(20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18.2%, 118명), 기타(11.2%, 73명), 교육직(7.7%, 50명), 자영업(5.9%,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34.7%(50명)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자영업(15.3%, 22명), 기타(11.8%, 17명), 무직(9.7%, 14명), 교육직(6.9%, 10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3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의 내담자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7.7%), 단순노무(6.8%), 무직(6.6%), 기타(5.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직(15.0%), 자영업(11.4%), 단순노무(8.3%), 기타(7.9%)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화상상담과 면접상담을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주부

〈 직업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202	31.1	1	0.7	203	25.6
회사원		118	18.2	50	34.7	168	21.2
단순노무		35	5.4	2	1.4	37	4.7
자영업		38	5.9	22	15.3	60	7.6
공무원		20	3.1	7	4.9	27	3.4
경찰		1	0.2	-	-	1	0.1
군인		-	-	2	1.4	2	0.3
교육직		50	7.7	10	6.9	60	7.6
전문직		31	4.8	2	1.4	33	4.2
운전		-	-	3	2.1	3	0.4
세일즈		4	0.6	-	-	4	0.5
학생		6	0.9	4	2.8	10	1.3
간호사		2	0.3	-	-	2	0.3
의사		-	-	1	0.7	1	0.1
예술인		6	0.9	1	0.7	7	0.9
종교인		-	-	1	0.7	1	0.1
법조인		2	0.3	2	1.4	4	0.5
기술직		3	0.5	-	-	3	0.4
무직		27	4.2	14	9.7	41	5.2
기타		73	11.2	17	11.8	90	11.3
미상		31	4.8	5	3.5	36	4.5
합 계		649	100	144	100	793	100

와 회사원이 많았던 점은 동일하였으나 화상상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화상상담 주부 31.1%, 회사원 18.2%. 면접상담 주부 24.4%, 회사원 7.7%). 남성의 경우에도 회사원이 1순위인 점은 동일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고(화상상담 회사원 34.7%, 면접상담 회사원 19.4%), 다음으로 화상상담에서는 자영업(15.3%)이 많았으나 면접상담에서는 무직(15.0%)이 많았다.

앞서 살펴본 화상상담 연령층 분석에서 남녀 모두 30, 40대의 비율이 높았는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 자녀를 둔 주부나 직장, 업장에 속해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화상상담의 장점인 이동과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월수입별

여성은 무·미상, 201~300만원, 101~200만원, 301~500만원 순으로
남성은 301~500만원, 무·미상, 201~300만원, 501만원 이상 순으로

월수입을 살펴보면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33.7%(26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1~300만원 이하(18.8%, 149명), 301~500만원 이하(16.5%, 131명), 101~200만원 이하(14.2%, 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37.0%(24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300만원 이하(19.0%, 123명), 101~200만원 이하(15.3%, 99명),

〈 월수입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30만원 이하		14	2.2	2	1.4	16	2.0
31 ~ 100만원 이하		70	10.8	5	3.5	75	9.5
101 ~ 200만원 이하		99	15.3	14	9.7	113	14.2
201 ~ 300만원 이하		123	19.0	26	18.1	149	18.8
301 ~ 500만원 이하		81	12.5	50	34.7	131	16.5
501만원 이상		22	3.4	20	13.9	42	5.3
무 · 미상		240	37.0	27	18.8	267	33.7
합 계		649	100	144	100	793	100

301~500만원 이하(12.5%, 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1~500만원 이하가 34.7%(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없거나 미상인 경우(18.8%, 27명), 201만원~300만원 이하(26명, 18.1%), 501만원 이상(20명, 13.9%) 순으로 나타났다.

3. 사건내용별

여성은 이혼, 양육비, 부부갈등 순으로

남성은 이혼, 양육비, 가사기타 순으로 상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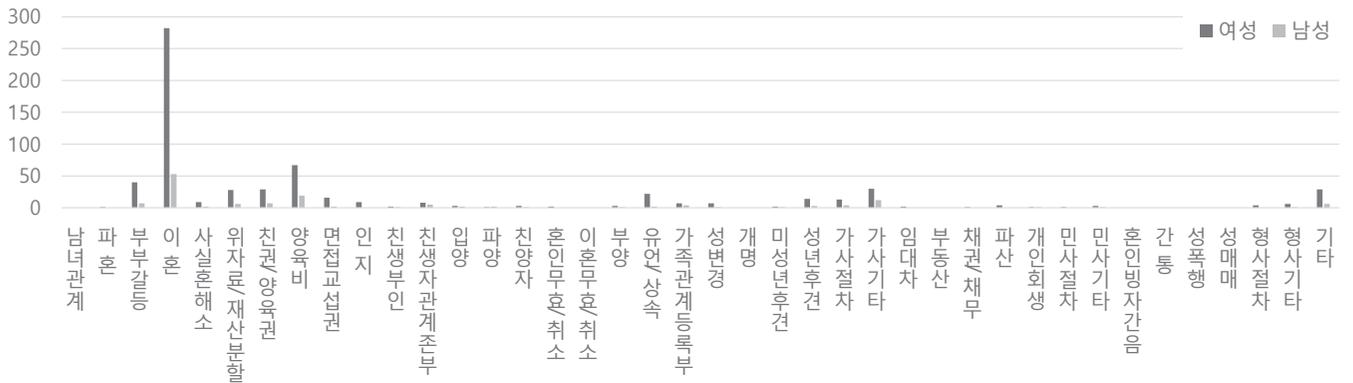
상담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총 793건 중 가사사건이 733건으로 92.4%를 차지하였다. 민사사건은 14건(1.8%), 형사사건은 11건(1.4%) 있었고, 그 외 기타가 35건(4.4%)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793건 중 335건(42.2%)에 달했다. 다음은 양육비(86건, 10.8%), 부부갈등(47건, 5.9%), 가사기타(42건, 5.3%), 친권/양육권(36건, 4.5%), 기타(35건, 4.4%), 위자료/재산분할(34건, 4.3%), 유언/상속(24건, 3.0%), 면접교섭권(18건, 2.3%), 성년후견·가사절차(각 17건, 각 2.1%), 친생자관계존부(13건, 1.6%), 사실혼해소·가족관계등록부(각 11건, 각 1.4%), 인지(9건, 1.1%), 성변경(8건, 1.0%), 형사기타(7건, 0.9%), 입양(5건, 0.6%), 친양자·부양·파산·민사기타·형사절차(각 4건, 각 0.5%), 친생부인·파

양·미성년후견(각 3건, 각 0.4%), 혼인무효/취소·임대차·개인회생(각 2건, 각 0.3%), 파혼·채권/채무·민사절차(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총 649건 중 이혼이 282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67건, 10.3%), 부부갈등(40건, 6.2%), 가사기타(30건, 4.6%), 친권/양육권·기타(각 29건, 각 4.5%), 위자료/재산분할(28건, 4.3%), 유언/상속(22건, 3.4%), 면접교섭권(16건, 2.5%), 성년후견(14건, 2.2%), 가사절차(13건, 2.0%), 사실혼해소·인지(각 9건, 각 1.4%), 친생자관계존부(8건, 1.2%), 가족관계등록부·성변경(각 7건, 각 1.1%), 형사기타(6건, 0.9%), 파산·형사절차(각 4건, 각 0.6%), 입양·친양자·부양·민사기타(각 3건, 각 0.5%), 친생부인·혼인무효/취소·미성년후견·임대차(각 2건, 각 0.3%), 파혼·파양·채권/채무·개인회생·민사절차(각 1건, 각 0.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총 144건 중 이혼이 53건(3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19건, 13.2%), 가사기타(12건, 8.3%), 부부갈등·친권/양육권(각 7건, 각 4.9%), 위자료/재산분할·기타(각 6건, 각 4.2%), 친생자관계존부(5건, 3.5%), 가족관계등록부·가사절차(각 4건, 각 2.8%), 성년후견(3건, 2.1%), 사실혼해소·면접교섭권·입양·파양·유언/상속(각 2건, 각 1.4%), 친생부인·친양자·부양·성변경·미성년후견·개인회생·민사기타·형사기타(각 1건, 각 0.7%) 순으로 나타났다.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건 내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733건 (92.4%)	남녀관계	-	-	-	-	-	-
	파 혼	1	0.2	-	-	1	0.1
	부부갈등	40	6.2	7	4.9	47	5.9
	이 혼	282	43.5	53	36.8	335	42.2
	사실혼해소	9	1.4	2	1.4	11	1.4
	위자료/재산분할	28	4.3	6	4.2	34	4.3
	친권/양육권	29	4.5	7	4.9	36	4.5
	양육비	67	10.3	19	13.2	86	10.8
	면접교섭권	16	2.5	2	1.4	18	2.3
	인 지	9	1.4	-	-	9	1.1
	친생부인	2	0.3	1	0.7	3	0.4
	친생자관계존부	8	1.2	5	3.5	13	1.6
	입양	3	0.5	2	1.4	5	0.6
	파양	1	0.2	2	1.4	3	0.4
	친양자	3	0.5	1	0.7	4	0.5
	혼인무효/취소	2	0.3	-	-	2	0.3
	이혼무효/취소	-	-	-	-	-	-
	부양	3	0.5	1	0.7	4	0.5
	유언/상속	22	3.4	2	1.4	24	3.0
	가족관계등록부	7	1.1	4	2.8	11	1.4
민 사 14건 (1.8%)	성변경	7	1.1	1	0.7	8	1.0
	개명	-	-	-	-	-	-
	미성년후견	2	0.3	1	0.7	3	0.4
	성년후견	14	2.2	3	2.1	17	2.1
	가사절차	13	2.0	4	2.8	17	2.1
	가사기타	30	4.6	12	8.3	42	5.3
	임대차	2	0.3	-	-	2	0.3
	부동산	-	-	-	-	-	-
	채권/채무	1	0.2	-	-	1	0.1
	파산	4	0.6	-	-	4	0.5
	개인회생	1	0.2	1	0.7	2	0.3
	민사절차	1	0.2	-	-	1	0.1
	민사기타	3	0.5	1	0.7	4	0.5
	형 사 11건 (1.4%)	혼인빙자간음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	-	-	-	-	-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4	0.6	-	-	4	0.5
형사기타	6	0.9	1	0.7	7	0.9	
기 타 35건(4.4%)		29	4.5	6	4.2	35	4.4
합 계		649	100	144	100	793	100

김진영 상담위원

출생통보제의 시행, 관련 제도의 변화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출생통보제의 시행

지난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 제44조의5). 출생통보제란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녀와 관련된 출생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아동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이른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법제도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생부들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결 2023. 3. 23, 2021헌마975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를 다루었으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하였다).

2. 출생통보의 절차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 기간(자녀의 출생일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1)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 수 및 출생 연월일시 등)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생정보를 제출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제3항).

3)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며,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4 제1항-제3항).

3. 출생통보제의 한계

1)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시행으로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빠짐없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즉 이에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출생통보제의 시행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출생통보 의무를 이행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헌법재판소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재결 2023. 3. 23, 2021헌마975), 이 세상에 태어난 아동은 누구나 출생 후 신속하게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은 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출생신고 기간이 훨씬 짧다. 예를 들어, 독일 7일, 프랑스 5일, 일본 14일, 오스트리아 7일, 스위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10일, 뉴욕주 5일 등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즉시’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출생신고 기간이 날이나 주 단위로 정하여져야 하고, 월이나 연(年)

단위로 정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Schmahl, Kinderrechtskonvention, 2017, S. 131). 이렇게 볼 때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우리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은 출생등록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출생통보제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 후 출생등록이 될 때까지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기간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출생신고 기간을 2주(14일) 정도로 단축하고,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출생통보제에 따라 출생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 이후 1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는 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현재는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출생통보제의 입법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출생신고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자녀의 출생 후 36시간 내에 출생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 시행

1)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따라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출생이 기록되고, 이와 함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도 기록된다.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므로, 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예컨대 미혼모 등), 처음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임신여성은 사회에서 고립된 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산모와 영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출산(프랑스), 신뢰출산(독일)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모의 익명성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및 영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2) 익명출산이란 임신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출산 전후에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에 관한 비용은 국가나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베이비박스과 차이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자녀를 출산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익명출산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생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기도록 권유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생모의 판단에 따르며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남기면 봉투에 밀봉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녀를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나중에 자녀가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생모의 동의를 받아 자녀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다만 생모의 성명과 주소 등 생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출산 당시의 상황, 익명출산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가 익명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출산은 임신여성과 자녀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익명출산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1941), 룩셈부르크(1993), 이탈리아(1997), 오스트리아(2001) 등이 있으며,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

3) 신뢰출산은 임신한 여성에게 의료기관에서 익명(또는 가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익명출산과 같지만,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녀의 출생등록부에는 생모의 가명이 기록되지만, 이와 별도로 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는 봉투에 밀봉되어 국가기관

이나 자녀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보관된다. 자녀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봉투에 담긴 생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나, 생모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신뢰출산은 익명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신여성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익명출산과 달리 생모의 인적사항이 보존되므로,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모의 경우에는 신뢰출산제도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4년에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신뢰출산 서비스의 제공이 익명출산이나 베이비박스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신뢰출산과 익명출산, 베이비박스가 공존하고 있다. 물론 익명출산과 베이비박스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4) 우리사회에도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이른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지난 7월 19일에 같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생통보제의 시행이 야기할 수도 있는 부작용(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와 사회로부터 고립된 출산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제정, 시행된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독일의 신뢰출산제도와 같이 모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모의 익명성은 완전히 보장되는 반면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모의 익명성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는 신뢰출산제도를 입법모델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에 의하면 임신여성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모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보관되며,

자녀의 청구가 있는 경우 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생부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참조). 예외적으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나 생부의 동의 없이도 모(또는 생부)에 대한 인적 사항의 공개가 가능하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려는 임신여성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신뢰출산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공인된 상담소의 수는 1800개가 넘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보호출산제도와 관련된 이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오늘날까지 달성되지 않고 있다. 신뢰출산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은 당국의 묵인하에 존속하고 있다. 이는 독일사회에서 익명성의 완벽한 보장을 원하는 임신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고, 미혼모나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편견이 없는 독일사회에서도 익명출산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없지 않다.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보호출산제가 서둘러 입법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탄생한 보호출산제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 출생통보제와 민법상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2)

1)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도 모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A가 남편 B와 이혼한 후 200일 만에 자녀 C를 출산하면, C는 B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일단 B와 C 사이에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만약 A가 남편 B가 아니라 D와의 혼외관계에서 C를 임신했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종래에는 이런 경우 A 또는 B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C는 A의 혼인외의 자가 되고(즉 B와 C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생부 D가 C를 인지함으로써 C와 D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 A 또는 B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C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는 일단 C를 B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 소송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A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623).

이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제3항. 이 점에 있어서 개정법은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ii)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는 달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본문). iii)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다(민

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즉 모나 모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며,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854조의2 규정에 따라 모나 모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며,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기 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의 전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전 남편이 아버지로 등록되며, 모나 모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정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결국 개정의 의의가 상실된다.

3) 한편 출생통보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관한 민법 제854조의2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운명에 놓여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 기간(자녀의 출생일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즉, ①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를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 ③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 → ④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일단 자녀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85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은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모의 전 남편이 자녀의 부(父)로 기록되므로, 모는 개정 전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도입한 취지는 사실상 물각될 것이다. 위 1)의 사례에서 A가 C의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출생통보제의 절차에 따라서 C는 직권으로 출생등록이 될 것이며, 이 경우 B가 C의 아버지로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할 수 없으며, A 또는 B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7년 민법개정 전과 차이가 없게 되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모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6)

제 4 강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 INTRODUCTION

불안 및 공황장애는 안정된 삶을 방해한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아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며, 비로소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불안도가 높거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 구성원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와 분위기를 위해서는 불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른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강에서는 불안, 공황, 강박 등에 대해 알아본다.

■ POINT

1. 서론

불안이 가중되면 병적인 불안장애로 악화할 수 있는 만

큼 불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종 사고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걱정도 비례하여 늘어났는데 사회문제, 생활고, 취업난 등이 그것이다.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불안감도 구체적인 이유와 맥락이 있다. 그러나 병리적으로 진단받을 만큼 심각해지면 이유나 맥락 없이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이러한 병리적 불안은 구체적으로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분리불안장애, 강박행동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올바른 걱정이 필요하다.

2. 본론

정신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공포,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해 하나의 전제를 만들었다. 하나의 예로 남자아이가 엄마와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후 그 생각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라는 불안이 올라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어떤 형식으로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든 바뀌서 안 좋은 생각을 다른 것으로 변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동물에 대한 공포증(불안)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강박의 이유도 분석한 적이 있는데, 한 사례에서 강박을 보이는 아이를 면밀히 살펴보니 사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으므로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식의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아버지는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퇴행적, 무장해제, 무능력한 모습 등의 행동을 보였다. 프로이트는 강박이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1) 방어기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 역시 외부로 표출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이 올라올 때 이를 감추고자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기제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왜곡된 방식이기에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전가시킬 수 있다.

① 억압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무의식적 행동이 '억압'이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억제라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누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억압이다. 불안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이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무의식적으로 계속 숨기는 것이다. 안 좋은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기억나지 않는 무의식에 감춘다. 안타까운 것은,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와 엉뚱한 데서 표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의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압력이 너무 세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본인이 의식하면 현실적으로 살 수 없으니 그 피해 경험을 억압해 기억 자체를 망각한 경우가 종종 있다.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하는 해마 부위의 특정 기억이 사라진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본인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리장애가 그 예이다. 본인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없어 자신을 분해해 새로운 인격을 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기억상실이나 다중성격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억압된 것이 말실수나 엉뚱한 행동, 잊어버리기 등 다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② 전치

두 번째 행동으로 '전치'가 있다.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표출해도 비교적 안전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집에 와서 애꿎은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약 상사가 경상도 사람인데 아내도 경상도 사람이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직접 상사에게 감정 표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전치 역시 우리 불안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방어기제다.

③ 투사

세 번째로 '투사'라는 것이 있다. 내 안의 불안을 다른 이에게 뒤집어씌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전가하는 것이다. 방어기제 중 가장 미성숙한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남 탓이 바로 투사이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려는 남편이 아내도 그럴 것이라고 하여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다.

④ 상징화

네 번째로 '상징화'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은 은유적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상실을 겪은 후에는 '뿌리가 뽑힌 나무 같다', '태풍에 무너진 나무 같다' 등 자신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른 식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상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⑤ 퇴행

다섯 번째로 '퇴행'이다. 퇴행은 심한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일컫는다. 대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 사랑을 빼앗겨 불안하게 될 경우, 나도 동생처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다시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퇴행 또한 방어기제이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쪽에 웅크려서 어린아이처럼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인다.

⑥ 원상복구

여섯 번째로 '원상복구'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엄습해 들어오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 해서는 안 될 생각,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 머리를 흔들며 원상복구하는 행동도 불안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⑦ 전환

일곱 번째로 '전환증상'이다. 전환증상, 다른 말로 히스테리는 공격적 본능, 성적 본능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되어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나 윤리 규범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그 예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지고 충동을 억누르는 힘이 한계에 도달하면 몸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환증상이다.

이런 행태들이 우리가 마음속 감당하기 힘든 불안을 일차적 방어기제의 형태로 숨기거나 억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정도가 심해 장애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들이다.

(2) 불안장애

불안장애에는 먼저 분리불안장애가 있다.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다고 보았으나 지금은 어른들도 진단받을 수 있다. 보통 아이들은 엄마와 애착 관계에 있고, 아이에게 엄마는 애착 대상이다. 이때,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애착 대상이나 늘 있던 공간과 분리되었을 때 혹은 애착 대상이 상실되었을 때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

다. 불안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것이다. 아이들의 경우 애착 대상과 애착 형성에 실패하거나, 애착 대상이 나를 때리거나, 애착 대상을 믿었는데 지켜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안이 과도해져서 선택적 무언증(또는 선택적 함구증)에 걸리기도 한다.

두 번째로 범불안장애가 있다. 보통 이야기하는 불안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범불안장애는 여러 사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을 느끼는 것이다. 쉽게 피로해지고, 과민하고, 긴장되어 있고, 수면을 못 하게 된다. 이유와 원인이 없다. 불안증을 치료할 때 항불안제를 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항불안제를 복용하면 극심했던 불안이 금세 안정이 된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질 때쯤 다시 불안해져 약을 다시 찾게 된다. 항불안제를 계속 쓰다 보면 약을 끊지 못하게 되고 마치 마약중독자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증을 치료할 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주치의 관리 아래 필요시에만 항불안제를 써야 하며 그 위험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불안장애가 있다.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예측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모르는 사람임에도 내가 가진 약점을 금방 알아볼 것으로 생각하여 낯선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것이다.

네 번째로 공포증이 있다. 공포증이란,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이고 현저하게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느끼는데 보통 울고, 떼를 쓰고, 얼어붙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공포증, 예컨대 동물이나 자연환경, 피, 주사, 신체 부위 손상에 대해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특정 공포증이라고 한다.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와 비슷하다. 대중교통이나 광장 같이 사람 많은 공개된 공간에서 힘들어진다. 사람이 많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대로 폐쇄 공간, 갇힌 공간에서 힘들어하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폐소공포증도 있다. 이를 겪는 사람들은 폐쇄 공간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신체 증상이 올라

을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광장공포증과 공황장애는 비슷하지만 광장공포증은 발작이 계속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황장애는 반드시 공황발작(panic attack)을 동반한다.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고, 상황이 감당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심박 증가, 땀 흘림, 떨림, 질식, 숨 가쁨, 가슴 통증, 오심, 복부 불편, 현기증, 어지럼증, 오한, 열감, 감각 이상, 마비감, 비현실감,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순식간에 몰려온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아도 아무런 원인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도 살면서 미약한 공황발작을 몇 번씩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기치 않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주저앉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 중에는 생물학적으로 혹은 기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 조절 이상이 있거나, 과호흡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거나, 편도핵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황장애를 만성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 주변에 사람들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불안도가 다르고 가족 구성원 또한 서로 다름을 인식할 수 있으나 그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3) 강박행동장애

강박장애 역시 크게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박장애를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OCD)라고 한다. 강박적 사고(Obsession)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한 예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특정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강박적 행동(Compulsion)은 어떤 행동으로든지 강박적 사고를 상쇄시키지 않으면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약 내 내면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때문에 강박적으로 씻게 된다. 즉 결벽증과 같은 강박 행동이 나

오게 된다. 무질서하다는 내면의 생각이 들면 강박적으로 자꾸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하게 된다. 이런 강박 행동을 통해 불안을 상쇄하려 하는데 하면 할수록 행동도, 생각도 없어지지 않는다. 흔히 정리 정돈, 손 씻기, 기도, 단어 반복 등이 드러난다. 이런 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

또 다른 것으로 저장강박이 있다. 자기 내면이 너무나 공허하고 결핍되어 있어 불필요한 물건에 애착을 갖는다. 없애 버려야 될 물건, 쓰레기 등을 집에 가져다 두어 집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그 물건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징화된 물건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4) 신체이형장애

신체이형장애도 일종의 불안증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그냥 산다. 그러나 신체이형장애가 젊은이들에게 있으면 위험하다. 자신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서 성형증독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점점 위축되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힘들어진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온종일 거울만 보는 친구들도 많다. 이 또한 강박증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타인이 관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 결함에 집착하고, 반복적으로 거울 보거나 몸단장을 하고, 타인과 외모를 비교한다.

3. 결론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불안이 가장 근거에 있다. 가족 중에서도 불안이 높거나 강박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부딪히는 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대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한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가족 역시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가족의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향해 달려온 시간**

1956년 창설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정하고 반세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자, 이를 토대로 9월 15일에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그 하위법인 민법, 특히 친족상속편은 현실과 관습중론에 치우쳐서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남녀차별적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이던 이태영 선생님은 민법의 그 봉건적인 조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누구보다 앞서 지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중에 그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란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법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많았던 현실 속에서 법 개정운동은 절실하고도 긴박한 문제라는 인식이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되자마자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 구현을 목표로 한 법률구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법률구조의 전국화를 위한 지부설치 사업과 함께 가족법개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가정문제로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내다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부조리한 관습과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았으므로, 상담소는 가족법을 바르게 고쳐야 법률구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률구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가정문제의 근본적 요인들을 해결하려면 가족법 개정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지나간 과정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분노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앞장에 서서 가족법 개정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 연재를 시작하며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해 그간의 경과와 전망 등을 정리한 광배희 소장의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머리말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운동을 시작한 뒤 마침내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 냈으므로 거대한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 성취는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바르게 앎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생활화, 서민화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캠페인과 강연, 서명운동을 통해 가족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회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국회의 문을 무수히 두드리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서 쟁취해낸 결과였습니다. 1962년의 첫 개정과 1977년과 1990년의 2차·3차 개정을 거쳐 남녀차별의 근본적 토대인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제의 폐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뒤에도 상담소는 완전한 양성평등, 부부평등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이루는 바탕인 가족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1948~2008)』(이하 60년사)는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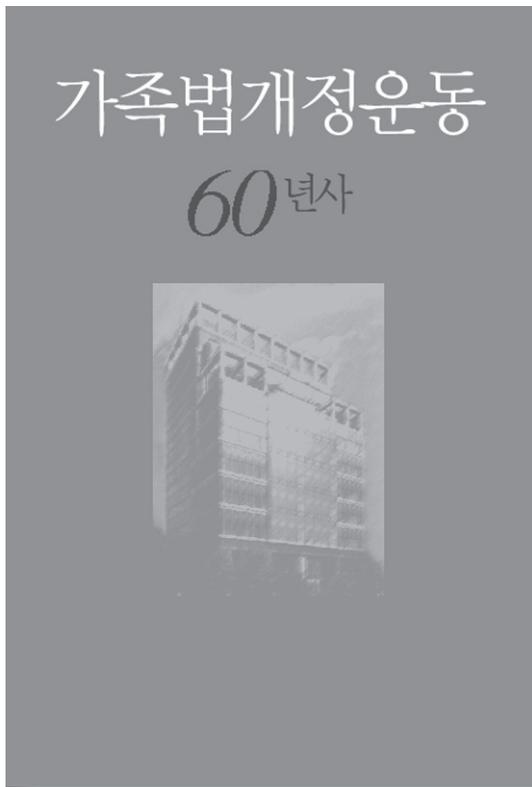
월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과 ‘법의 보호’를 올곧게 돌려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벌인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사회적 약자들은 단계적으로 인권과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계혈통, 남계혈통 위주의 법과 제도, 관습에 얽매어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비로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양성평등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91년에 가족법 3차 개정 이후 그 과정을 기록한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이하 37년사)를 펴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 『60년사』는 『37년사』를 바탕으로 그 뒤의 기록을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37년사』에서는 1958년의 신민법 제정을 제1차 개정으로 정의했으나, 『60년사』에서는 학계의 논의를 근거로 1962년, 1977년, 1990년, 2002년, 2005년, 2007년으로 개정의 역사를 가다듬어 정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정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연대 구분을 하면서 그 연속성을 살렸습니다. ‘부록’에는 법 개정안, 성명서, 의견서, 제안서, 청원서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실었는데, 『37년사』‘자료편’에 들어 있는 1990년 제3차 개정까지의 자료들은 생략했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려는 노력의 발판이라는 믿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새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편집부



성격과 가치관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 및 분노 조절이 잘 안되어 폭력 상황까지 가던 젊은 부부,
각각 집단상담과 자조모임 통해 이해의 폭 넓혀 관계 회복해

2021버2***폭행 / 2021버1*** 폭행,
2021버2*** 폭행 (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자조모임(집단상담/비대면 실시) 2회,
부부상담 6회 등 26회

상담기간

2021. 10. 12. ~ 2022. 5. 6.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2년 8개월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3세)이 있다. 맞벌이여서 아들은 외조모가 양육하며 주말에 아들을 만난다.

아내는 2021년 4월 사건당일 남편이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일로 언쟁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부간 대화 녹취기록이 확인되자 욕설하며 왼쪽 얼굴을 핥고 수회 손으로 때리며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며칠 후에는 이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하며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약 10회 핥키었고, 등을 약 3회 핥키는 폭행을 하였다. 남편은 2021년 7월 사건당일, 전날부터 있던 불화로 언쟁 중 아내에게 계속 욕설하였고, 진정하라고 하

는 아내의 오른쪽 뺨과 턱을 왼손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간 폭력을 한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위탁되었다.

부부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를 상호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 및 분노 조절이 잘 안되어 다투면 폭력상황까지 가는 패턴을 반복하여 왔다. 특히 아내가 결혼식 1달 전에 임신하여 결혼식 후 입덧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진심을 헤아리기 어려웠던 점도 갈등의 한 요인이었다.

사건 이후 부부는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여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초상담시는 10점 만점에 7~8점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하여 부부는 합의사항을 정하고 실천하였다. 그 결과, 부부싸움 후에도 남편은 이전과 달리 아내가 쓰는 카드를 정지하지 않았고, 아내는 혼자 화를 내거나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를 안 아내가 주식을 매도하였다. 남편이 이를 일방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책임문제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그러한 일은 재발하지 않았다. 또한 부부는 각 남편 집단상담, 아내 자조모임(집단상담)을 통하여 자신 및 상대방을 객관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종결평가시 아내는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으며, 향후 실천과제로 약속 잘 지키기를 정하였다. 남편은 종결평가시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5점으로 평가하고 아내를 재인식하게 된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으며, 향후 실천과제로 현재 상태 유지하기를 정하였다. 폭

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5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관계인(어머니) 전화상담 2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1. 10. 12. ~ 2022. 5. 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들, 24세)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아내(관계인)와의 사이에 1녀 1남(26세, 24세)이 있다. 딸은 중학교 졸업 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무직이고, 피해자는 대학 재학중이다.

2021년 5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아내에게 말하고 부모님 집에 다녀왔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던 아내와 딸이 짜증을 내자 소리를 질렀고, 아내가 울며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화를 내는 행위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았는데 피해자도 행위자를 밀었다. 이에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다. 집을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책을 집 밖으로 내놓았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다.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 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아내는 예금과 생활비 통장을 가지고 자녀들과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행위자는 거부하였고 생활비를 송금하였다. 아내와 자녀들이 사는 곳은 모르지만 연락은 하며, 2021년 11월에 피해자가 행위자를 찾아와 화해한 이후 피해자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아내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행위자가 반대하고 소송절차가 번거로워 이혼의사를 접고 별거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문

자를 보낸다고 하였다. 아내는 이혼을 고려한 사유로 행위자가 화를 많이 내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본건에서 행위자의 폭력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과거 경험이 떠오르며 힘들고 무섭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그리고 2022년 4월 아내는 사는 집이 만기가 된다면서 다시 집을 구할 것인지, 집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행위자에게 의논하였고, 행위자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행위자는 과거사를 굳이 거론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평상시 자신과 피해자 관계는 무난했지만 사건 당시의 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내는 별거하면서 혼자 자녀 둘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고, 집에 들어올 것인지 여부를 행위자와 의논한 결과 마음을 정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사건 당시 행위자와의 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점, 상담종결시는 5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행위자가 화를 잘 조절하게 되었고 폭력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향후 행위자가 아내의 기대에 더 부응할 것이라고 격려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집단상담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등 9회

상담기간

2021. 10. 15. ~ 2022. 5. 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5세, 2세)이 있다. 행위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에 대한 반발로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행위자는 2020년 7월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

자 주방에 있던 식탁, 의자, 어항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또 다른 날에는 피해자가 외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랍장, 식기류 등을 방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참기름과 주스 등을 붓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행위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본소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행위자는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임하기 전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7월에 이혼판결을 받았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행위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해자가 지정되었고 각 원부모와 살고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비양육 자녀를 상호 면접교섭하기 위해 함께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결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재결합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행위자 부모의 적극 반대가 있었고,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을 피해자가 어기고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면서 행

위자는 재결합에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유롭게 살면서 주말에만 만나자는 입장이고, 행위자는 이성을 만나는 일을 삼가자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행위자는 비양육자녀를 지속적으로 면접교섭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재결합에 희망을 두면서도 피해자가 아이나 가정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이성을 만나는 것 같으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혼의 발단을 숙고하고, 재결합 여부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따르라는 것은 억지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면접교섭 방식 및 양육비 지급 등을 점검한 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며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행위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해지는 상황에 따라 재결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7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7/4	8명	문제해결 기술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18	11명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7/3	15명	관계의 비결, 잘 듣고 잘 말하기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7/10	14명	동상이몽, 나의 가치 너의 가치	
		7/17	13명	좋은 관계,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7/24	13명	관계성찰, 10년 전 내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한다면	
동지교실	7/10	32명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할까요?



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서 혹시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건가요?

A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55조 제2항).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 합니다.

부모와 자녀 ① - 친자의 성, 친생자⑥

●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

Q 문 20 | 저는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얼마 전 그 중 한 여자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인지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제 자녀로 알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아이가 임신될 때쯤에는 그 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자녀가 아닌 것을 밝힐 수 있나요?

A 사기나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인지 취소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1조). 한편 인지신고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인지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Q 문 21 |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을 미루다 아이를 낳

●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는 양육책임이 있다

Q 문 22 | 저는 대학 선배인 남자와 연애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아이는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이 아버지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 외 자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녀는 등록부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생신고 후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는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가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인지되면 친권자는 부모가 되므로, 인지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를 귀하로 정해 줄 것을 같이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864조의2).

●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

Q 문 23 | 여러 형제 중 제 출생신고만 잘못되어 숙부님이 제 부모로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보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부의 정정 신청으로 친생부모의 이름을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친자관계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1. 26. 자 80스44 결정). 따라서 귀하처럼 다른 사람의 친자로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부의 정정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65조).

●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Q 문 24 | 최근 보험금 지급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제 아이로 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자 우리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괘씸한 것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상속문제도 있어서 이 아이를 제 등록부에서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인의 친자로 올렸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귀하와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재판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이 경우 그 아이는 귀하의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귀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없지만, 남편의 혼인 외 자이므로 남편의 등록부상에는 그대로 남게 되며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 남편의 혼인 외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지

Q 문 25 | 남편에게는 오래 전에 외도를 하여 낳은 혼인 외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재산이 상속되는지요?

A 남편과 혼인 외 자 사이에는 친자관계로 인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남편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되나, 부인과는 혈족관계가 아니므로 부인의 재산이 그 아이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부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Q 문 26 | 저의 생모는 비혼모였고,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의 법률상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친어머니를 제 등록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 늘 가슴에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부에 제 어머니를 밝힐 수 있는지요?

A 등록부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귀하 등록부상 모를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5년 전 남편의 외도를 사유로 재판을 통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각 7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혼 후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라고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이리저리 피하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남편의 SNS를 발견했는데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아이들과 외식 한번 마음껏 하지 못했는데 너무 패심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

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관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 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그 절차가 더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위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지난 3월에는 양육비 미지급 첫 실행 사례로 10년동안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외세의 지배를 또다시 받게 될지언정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레지스탕스 출신의 프랑스 제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이 나치 부역자들을 처형, 처벌한 후 국민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 역시 레지스탕스 출신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4년간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엄격하고 단호했다. 약 200만 명이 조사 대상이었고, 이 중 약 35만 명이 재판에 회부 되어, 10만 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6,763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에 대한 단죄는 더욱 엄격했다. 당시 드골 정부는 900여 종의 신문·잡지 가운데 부역 언론 694종을 폐간이나 재산몰수로 처벌했다.

최소한 이런 기준이라도 적용했다면 일본에 부역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군사독재에 부역했으면서 여전히 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언론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자신들이 저지른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 특히 알제리 전쟁에 대한 태도 등에서 제국주의 프랑스에 대해 할 말도 많지만 적어도 매국 부역자들에게 대한 이런 태도는 부러울 따름이다. 누군가는 4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너무 길었기에 오히려 단호한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라 말한다. 더욱이 우리에게 해방 직후에 벌어진 한국전쟁과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분단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어 프랑스와 같은 태도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이 이렇가 보다. 이 시대에 이르러 좌파 우파를 나누고 빨갱이를 운운한

다. 세계적으로 극우가 활개 치는 시대라지만 외국의 극우는 우리나라 자칭 우파처럼 내 나라를 낮춰보지 않는다. 자칭 우파 애국자도 갖지 못한 아쉬운 내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현실이니 지금 북한과 별 관계도 없는 일제강점기 혼란기에 독립을 최우선의 과제에 두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상의 흐름에 편승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두고서도 ‘빨갱이’를 운운하는 처참한 세태에 이르고, 식민지근대화론을 필생의 업적으로 삼은 이들이 이런저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 『독립운동 열전 1-잊힌 사건을 찾아서』는 일제강점기, 독립과 해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인 인물들, 개인의 일신을 위해 그들을 배신했던 이름들,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갖가지 사건들을 찾아 기록한 책이다. 이미륵의 눈물겨운 망명길부터 김상옥의 총격전, 이런저런 배신의 역사와 그런 와중에도 빛나던 투쟁이 있다.

구 코민테른 문서보관소의 한국 관련 자료와 조선총독부 고등경찰 기록을 비교·검토하는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임경석 교수가 이 책의 저자다. 저자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한국근대사를 전공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책은 2017년부터 《한겨레21》에 연재했던 〈임경석의 역사극장〉을 엮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36년, 거의 모든 백성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는 매국 부역자를 단죄하기에 너무 긴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하기에 적어도 독립운동을 위해 피 흘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더 절실하고 깊고 높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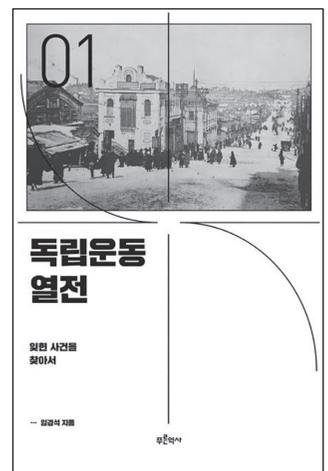
매국 부역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그래서일까 그들은 너무 당당하다.

이숙현 편집부장

독립운동 열전 01 잊힌 사건을 찾아서

임경석 지음

푸른역사, 2022(초판 3쇄)



〈맘마 미아!〉

감독

필리다 로이드

출연

메릴 스트립, 아만다 시프리트,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
스텔란 스카스가드, 줄리 월터스, 크리스틴 바란스키, 도미닉 쿠퍼



그리스의 작은 섬 칼로카이리에서 엄마 도나(메릴 스트립)와 살고 있는 스무 살 소피(아만다 시프리트)는 결혼을 앞두었다. 하지만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는 소피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식장에 입장할 아빠가 없다는 것. 젊은 시절 친구 로지(줄리 월터스)와 타냐(크리스틴 바란스키)와 함께 '다이나모스'라는 록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소피를 낳은 후 홀로 작은 호텔을 경영하며 싱글 맘으로 살아온 도나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누군지 말해준 적이 없다. 엄마의 옛날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한 소피는 아빠로 추정되는 세 남자, 샘(피어스 브로스넌)과 빌(스텔란 스카스가드), 해리(콜린 퍼스)의 존재를 알게 된다. 소피는

결국 엄마 몰래 세 남자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다.

2008년 작 〈맘마 미아!〉의 표면적인 주된 갈등은 '세 남자 중에 누가 진짜 내 아빠인가?'라는 소피의 불안인 것처럼 시작한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이야기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는 게 분명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딸에게 어린 시절 엄마는 세계의 중심이자 나의 전부였다가, 성장할수록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는 데 이르는 갈등의 과정을 거친다. 딸이 엄마에게 '젊었을 때 왜 그랬어?'라고 따져 묻는 건, 그러나 엄마와의 대결이라든가 전적인 부정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다소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각종 제약은 크게 변하지 않기에, 딸이 성장할수록 엄마의 젊은 시절을 자신의 그것으로 느끼게 되고, 엄마의 지난 선택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좌절에 가까울 때가 많다.

소피가 비슷한 시기에 세 명의 남자와 사랑을 나눴던 도나의 치기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 남자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낳은 다음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채 외딴섬의 호텔을 악착같이 꾸렸던 엄마의 지난 이십 년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깝다. 소피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고들 하는) '정상 가족'을 꾸릴 수 있었다면, 엄마 혼자서 양육과 가사경제의 모든 것을 떠맡아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피는 친아빠를 찾아내서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품는데, '결혼식'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의 주요한 의례이기 때문에, 그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예비 남편에게 향하는 그의식을 치름으로써 '정상 가족'의 딸이 '정상 가족'을 이루는 아내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야기는 대체로 많이 험겁고, 그전까지 연극 무대에서만 활약했다가 이 영화로 처음 장편 데뷔작을 찍게 된 필리다 로이드의 연출은 영화라는 매체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듯 허둥지둥한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메릴 스트립이라는 대배우가 연기하는 도나가 딸을 애뜻하게 바라보며, 혹시라도 딸이 나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는 건 아닌지, 결혼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호텔 경영을 돕겠다는 결심이 딸의 미래를 막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딸이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 미래의 가능성을 이것저것 시험해 볼 가능성을 차단당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장면은 더없이 따사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영화의 결말은 가족 중심주의의 집착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능한 한 흥겹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향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맘마 미아!>는 스웨덴 그룹 아바의 히트곡들을 엮어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이미 대성공을 거둔 대중음악을 그대로 가져와 극적인 구성을 부여하고 노래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종류의 뮤지컬을 뜻하는데, 바로 그 장르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장본인인 <맘마 미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I Have a Dream>, <Dancing Queen>, <Mamma Mia>, <Super Trouper>, <The Winner Takes It All>, <Waterloo>, <Thank You for the Music> 등의 달콤한 히트곡들을 정신없이 쏟아낸다. 보는 내내 귀가 화려하게 트이는 듯한, 즐거운 주크박스 감상의 시간을 약속한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4년 7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박채영, 이지호, 박수빈, 이재민, 김원희, 이예린, 송도윤, 이준엽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박 연 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이 문구가 이곳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처음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그 적용 양상이 달라져 수많은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1은 2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개인에 맞춰 답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법조인만을 목표로 지금껏 달려왔지만, 현실에 차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목표의식은 사실 많이 퇴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답을 찾기 위해 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2주간 실무수습활동을 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그 중엔 답을 드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서 부뚱했던 사건도, 해결할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답을 찾아 드리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려운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내담자와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변호사님 및 상담위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의뢰인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할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하게 쓰인 하나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과거의 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향후 제 쓰임이 있는 곳에 기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하여 그 전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지만, 저 역시 이 곳에서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곳을 거쳐가는 수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답을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상담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재 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로스쿨 입학 전, 각종 매체에서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접하며 가사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사 사건을 접해보고 싶었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수습 모집 공고를 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족법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 및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이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각종 가사사건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단순히 법률 자문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사사건의 피해자 및 행위자 모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관이라고 느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상담참관 및 보고서 작성, 라오니 모임 등의 집단 상담 참관, 각종 서류 작성, 가정법원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참관하며 법률구조의 첫 단계인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였고,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현재 발생한 가사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만 접하던 가사 사건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건이라도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시는 상담위원분들을 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여실히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법률구조의뢰서, 소장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가사 사건의 법적 절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담위원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반영하여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며 법률구조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을 체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보다 다양한 사건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 외에서도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영향력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무수습 기간 동안 진행된 활동들을 통해서 법률

구조 사례와 절차를 체험하였고, 개인의 권리 구제 및 진정한 법률 복지를 구현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고,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그리고 함께 활동한 실습생 모두 감사합니다.

사명감이 필요함을 느꼈고, 상담소에 계신 분들과 상담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감정과 함께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 애 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2주 동안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수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담소의 모든 업무를 체험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법률구조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상담을 참관하고, 사이버상담을 직접 해보기도 하였고, 여러 사건의 실제 기록을 읽어보며 이혼소장을 작성하고, 상담소에서 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읽고 판례평석을 작성해보고,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가족법을 배우지 않았었는데 상담소에서 발행한 「어떻게 할까요」를 계속해서 읽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족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사업 중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라오니 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동지교실)를 참관하면서 상담소가 가정폭력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은 상담 참관이었는데, 야간상담을 포함한 본소에서의 상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참관하며 심리상담과 구별되는 법률상담의 차별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적용해야 할 법리와 그 결론을 고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가사 사건에 대한 저의 흥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민·형사 사건만을 다루었고, 이번 실습을 통하여 상담소에서 가사 사건을 처음 다루어 보았는데, 기록을 읽어보고 법리를 검토하며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데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아, 훗날 저도 백인변호사단의 변호사가 되어 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번 실무실습을 통해 상담소의 모든 업무에 봉사정신과

이 예 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기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고, 동시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족법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기에 두려움도 있었으나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께서 관련 법리를 설명해주신 덕분에 실무수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상담 참관이었습니다. 상담소에 찾아오신 내담자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법률상담에 참관하며 상담위원 선생님들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고민도 해보고, 판례를 적용할 때 어떤 사실관계가 더 필요한지 생각해보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소송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름만 알고 있던 서류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문서를 제출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오니모임, 동지교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연을 통해 참가자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분들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송이 종결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후의 삶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조인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책으로만 배운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상담위원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진행

2024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이해, 법률구조서류 검토, 법률구조의뢰서 등 법률구조서류 작성, 사이버 상담 실습, 상담(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변호사 업무 실습으로 소장 작성 및 판례 평석,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참관 및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총 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연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재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강애리 / 이예은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7.9. 강서지역자활센터-생활법률

- 김민선 변호사

7.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대학생현장체험실습**

이화여대 경영학과 (7.1-8.30.) 박채영, 이지호
 동국대 법학과 (7.1-7.26.) 김원희, 박수빈, 이예린,
 이재민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17일, 24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사건과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조정하였다. 22일, 26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감사회의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관장하고 지도하였다.



2024년 7월 상담통계

총 건수 5,297

법률상담 (4,522)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1,214	3,157	134	16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80	42	153

• 인터넷 정보 이용 95,57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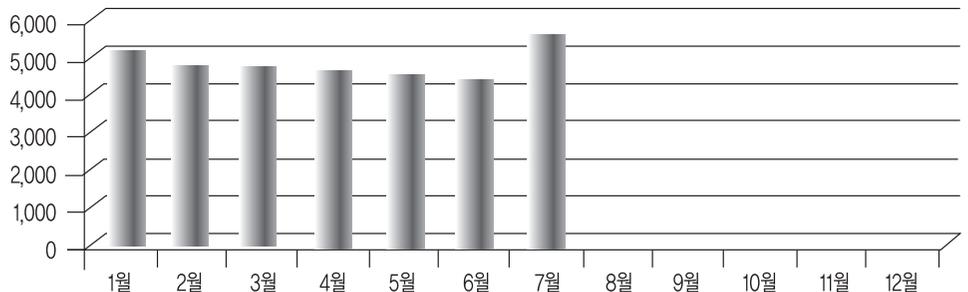
2024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29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522건(85.4%), 화해조정 580건(11.0%), 소장 등 서류작성 42건(0.8%), 소송구조 153건(2.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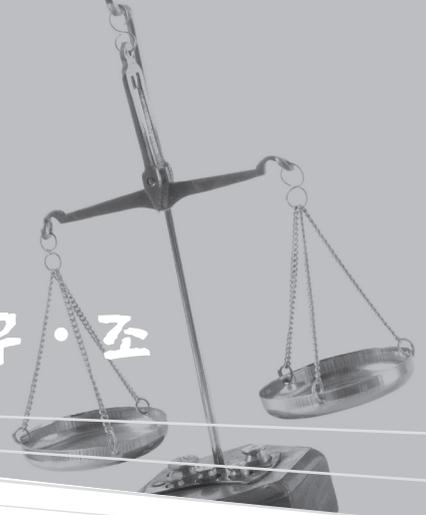
법률상담 4,52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6월에 비해 부부갈등(2.8%→2.9%), 부양(0.4%→0.7%), 파양(0.1%→0.3%), 가사기타(16.4%→23.1%), 부동산

(0.1%→0.3%), 채권·채무(0.3%→0.5%), 민사기타(0.6%→1.7%), 형사절차(0.3%→0.4%), 형사기타(0.9%→1.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52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14건(26.9%), 전화상담 3,157건(69.8%), 인터넷상담 134건(3.0%), 서신상담 16건(0.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 없이 이혼한
친모의 면접교섭 심판 청구

법률구조 2024-1-6

담당 : 김선옥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3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각 남, 10대 이하)을 두었으나 2020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코로나19 범유행이 시작되어 한국으로의 입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메시지를 받은 직후 어렵게 한국에 귀국하여 사건본인들을 만나러 피고의 집에 갔다. 피고는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찾아오면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는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2023년 사건본인들을 보기 위해 다시 입국하였지만 피고의 허락하에 잠깐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4. 6. 4.)

1.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7: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3박 4일

나. 방법: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들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주기로 한다.

다. 준수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위 일정 및 방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늦어도 3일 전까지 그 사정을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월 2회의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2) 피고는 사건본인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발생, 거주지 이전, 전학, 해외 출입국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하고, 원고의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 진행 시 상대방에 대한 비난, 폭언, 폭행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위 면접교섭과 더불어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자유롭게 전화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마. 위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심판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5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6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8년경 피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가출하였고, 현재까지 원고 및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6.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2-1-294

담당 : 경진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201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교회 예배 등 신앙생활, 자녀 양육 및 훈육 문제에 대한 이견을 보여 갈등을 빚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원고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피고는 2022년 7월경 원고가

교회 예배 후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라는 피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애들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않게 꺼져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피고를 피해 사건본인들과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귀가하자, 장난감 자동차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명치 부위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 이후부터 별거 중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국외에서 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법률구조 2024-1-18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50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남, 10대)을 포태하여 2011년 출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바 없어,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몽골 국적자이다. 원고는 건설 기술자로 몽골에 머물던 피고를 알게 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거하며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사건본인 임신 후 이혼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5년 피고는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피고는 약간의 생활비를 보냈고, 2017년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약 3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2023년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의 여동생을 통해 피고의 연락처를 알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과 피고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6. 24.)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극심한 폭행으로 20년간 별거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4-1-3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50대)는 1989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가위로 원고의 옷을 자르거나 머리를 자르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하거나 던지기도 하였다. 화장실 욕조에 찬물을 틀어놓고 원고의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을 하고, 벨트를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옷을 벗겨 놓고 원고를 폭행하였기에 원고는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원고는 언젠가 피고가 원고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시달리다 2004년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중이다. 원고는 최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6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6년 혼인하여 피고의 외도로 1993년 협의 이혼하였으나 2014년 재

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재결합 이후 원고의 목을 조르고, 원고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4년 1월경 피고는 유리구슬을 집어 들고 원고의 머리 부위에 내려칠 듯 위협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퇴거 및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집을 나갔다.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7.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110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공사현장에서 양쪽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해 근로능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1,900만 원만 있으면 마스크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넘어가 대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경비 등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였다.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결국 마스크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채무만 떠안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합한 월평균 9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신청인은 2,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7.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8월 휴강, 9월 23일, 10월 28일)
- ▶ 강사 : 김명소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24일(토)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삼성생명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 및 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24일(토)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